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4월 17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4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7. 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5.) 상정, 심사, 의결(수정)

제2차 전체회의(2026. 7. 1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서영교의원)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기도)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년을 성인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년별로 초기 비행부터 심화 범죄까지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운영 방향에 맞는 인사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호관찰 대상자인 소년과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비행성이 낮은 소년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죄학습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소년사법 통합기관 설치에 따른 추가 필요 인력 및 청사 확보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위원)

새로운 기관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시행일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12. 기타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을 통해 설치되는 새로운 기관이 보호관찰 등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안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새로운 기관이 이미 시범 시행 중인 점 및 이를 위한 직제 등이 준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 부칙 제1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제1호 중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를 “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와”를 “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청소년에”를 “소년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준용규정)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보호관찰소”로, 그 기관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본다.

안 부칙 중 “1년이”를 “6개월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소년에 대</u> <u>한 전문 기관의 관</u> <u>장 사무) -----</u> <u>-----</u> <u>-----</u> <u>-----</u> <u>-----</u>. 1. <u>제15조 각 호의</u> <u>사무 중 「소년</u> <u>법」 제2조에 해</u> <u>당하는 자와 관</u> <u>련된 사항</u> 2. <u>「소년법」에 따</u> <u>라 보호처분을</u> <u>받은 자에 대한</u> <u>교육</u> 3. <u>검사가 기소유예</u> <u>처분을 한 자 및</u> <u>교육장이 의뢰한</u> <u>소년에 대한 교</u> <u>육</u> 4. <u>「소년법」에 따</u> <u>라 보호처분을</u>	제15조의2(소년에 대 한 전문 기관의 관 장 사무) ----- ----- ----- ----- -----. 1. ----- -----<u>소년과</u>----- ----- 2.·3. (개정안과 같 음) 4. ----- -----

<u><신 설></u>	<u>받은 자와 보호</u> <u>자 및 교육장이</u> <u>의뢰한 보호자에</u> <u>대한 교육</u> 5. <u>청소년에 대한</u> <u>법 교육</u> 6. <u>청소년비행 관련</u> <u>자원봉사자 전문</u> <u>교육</u> 7. <u>그 밖에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u> <u>사무</u>	<u>----자의-----</u> <u>-----</u> <u>-----</u> <u>-----</u> 5. <u>소년에-----</u> <u>----</u> 6. <u>그 밖에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u> <u>사무</u> <u><삭 제></u> <u>제15조의3(준용규정)</u> <u>제14조제1항 후단</u> <u>의 기관에 대하여</u> <u>는 제19조, 제19조</u> <u>의2, 제20조, 제26</u> <u>조, 제27조, 제29조,</u> <u>제31조, 제32조, 제</u> <u>33조의2, 제35조,</u> <u>제36조, 제36조의2,</u> <u>제37조부터 제44조</u> <u>까지, 제46조, 제46</u> <u>조의2부터 제46조</u> <u>의5까지, 제47조부</u> <u>터 제50조까지, 제5</u>

		<u>2조부터 제55조까</u> <u>지, 제55조의2, 제5</u> <u>5조의3, 제60조, 제</u> <u>62조, 제64조, 제66</u> <u>조의 규정을 준용</u> <u>한다. 이 경우 제14</u> <u>조제1항 후단의 기</u> <u>관은 “보호관찰소”</u> <u>로, 그 기관의 장은</u> <u>“보호관찰소의 장”</u> <u>으로 본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1</u> <u>년이 경과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부칙 -----<u>6</u> <u>개월이</u>-----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교정청장”을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제1항 후단의 기관을 포함한다)”로, “보호관찰지소를”을 “지소를”로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관할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장 사무)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년과 관련된 사항
2.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
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
5. 소년에 대한 법 교육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15조의3(준용규정)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보호관찰소”로, 그 기관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본다.

제16조제1항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지소와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구성) ① · ② (생략)	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u>지방교정청장</u> ,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u>-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 지방교정청장-</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갇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후단 신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 ----- ----- ----- -----.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갇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단서
신설>

1. ~ 6. (생략)

<신설>

② 보호관찰소(제1항 후단의
기관을 포함한다)-----

-----지소를-----.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이 조에서 같다-----

---.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의 사무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관할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소년에 대한 전문 기
관의 관장 사무)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
년과 관련된 사항

2.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
에 대한 교육

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u><신 설></u> 제16조(보호관찰관) ① <u>보호관찰</u> <u>소</u>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u>을 받은 자의 보호자 및 교</u> <u>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u> <u>한 교육</u> 5. <u>소년에 대한 법 교육</u> 6.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무</u> 제15조의3(준용규정) 제14조제1항 <u>후단의 기관에 대하여는 제19</u> <u>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6조,</u> <u>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u> <u>조, 제33조의2, 제35조, 제36조,</u> <u>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u> <u>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u> <u>제46조의5까지, 제47조부터 제5</u> <u>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5조까</u> <u>지,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0</u> <u>조, 제62조, 제64조, 제66조의</u> <u>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u> <u>조제1항 후단의 기관은 “보호</u> <u>관찰소”로, 그 기관의 장은 “보</u> <u>호관찰소의 장”으로 본다.</u> 제16조(보호관찰관) ① <u>보호관찰</u> <u>소(보호관찰소지소와 제14조제</u> <u>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u> <u>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u> <u>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u>
---	--

② (생략)	<u>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u> <u>그 지소는 제외한다)</u>----- ----- -----. ② (현행과 같음)
---------------	--